

4월 월례 시민평화포럼

**NLL 분쟁을 넘어  
평화와 녹색공존의 서해를 위하여**

2009년 4월 14일(화)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후원 : 에버트재단



4월 월례 시민평화포럼

**NLL 분쟁을 넘어  
평화와 녹색공존의 서해를 위하여**

2009년 4월 14일(화)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후원 : 에버트재단

시민평화포럼

## NLL 분쟁을 넘어

### 평화와 녹색공존의 서해를 위하여

<시민평화포럼 일정안내>

14:00 인사말 : 정현백 공동대표

포럼 좌장 : 이용선 공동대표

14:10~15:30

발제 1 서해해상 남북분쟁의 역사와 서해상 남북 평화공존 방안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발제 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 추진 현황

남정호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발제 3 서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와 녹색공존의 바다로

김제남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15:30~15:50 휴식

15:50~16:30

지정토론 1 이봉조(전 통일부 차관)

지정토론 2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정토론 3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16:30~17:00 종합토론

시민평화포럼

## NLL 분쟁을 넘어

### 평화와 녹색공존의 서해를 위하여

#### <글쓰는 순서>

발제문 1 서해상 남북분쟁의 역사와 서해상 남북 평화공존 방안 p6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발제문 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 추진 현황 p13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발제문 3 서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와 녹색공존의 바다로 p38

김제남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토론문 1 이봉조(전 통일부 차관) p47

토론문 2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p50

토론문 3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p51

## 발제 1

# 서해해상 남북분쟁의 역사와 서해상 남북 평화공존 방안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1. 북방 한계선의 역사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은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Mark W. Clark)이 1953년 8월 30일 동해 및 서해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동해는 지상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해는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이후 남북관계에서 남측은 관련 해역의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9년과 2002년에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 먼저 북방한계선의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군 총사령관 및 유엔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은 1952년 9월 27일 제3국 선박들의 북한 지원, 교역 및 출입저지를 통해 공산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유엔군이 주장하는 정전 조건을 중공과 북한이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해안 봉쇄선, 즉 클라크 라인(Clark Line)을 발표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해상 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1951년 12월부터 1952년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수역(Coastal Waters) 관련 협상과정에서 유엔군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고, 유엔군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군측은 12해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전협정 체결로 해상봉쇄선으로 발표된 클라크 라인은 철폐되었다. 정전협정 2조 15항, 즉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의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북한의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

다”는 조항에 따라 클라크 라인은 1953년 8월 27일 철폐되었다.

하지만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이행과 잠재적인 군사교전을 줄이려는 의도로 유엔사의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북한은 1955년 12해리 기준으로 자신들의 영해를 선포하고, 이후 간헐적으로 NLL을 침범하였으며, 1973년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을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은 1957~1958년 북한 해군의 성장으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12해리를 힘으로 유지하려고 했고, 1957년 11월에는 휴전이후 처음으로 56척의 한국어선들을 나포하기도 했다.

NLL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대 들어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협의를 통해, 남북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해 나가며, 새로운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 쌍방이 관할하고 있는 수역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에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이행이 지연되면서, 1999년 남북간의 무력충돌 사태인 연평해전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에는 서해교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1999년 연평해전을 겪으면서 북한은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여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이후 서해 평화정착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국제상선 공동망 운영 등을 통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에 합의하였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 평화협력 지대 방안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NLL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새로운 불가침경계선을 확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NLL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

가침 부속합의서 내용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 2.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쟁점

### 1) 영토와 영해 개념의 적용

한국 국방부는 NLL을 우리 측이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고, 북측도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에 '응고의 원칙'에 입각, 사실상 우리의 영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북방한계선이 수 십년 동안 지켜져 왔으며, 유엔군 사령부가 NLL을 확정 발표했을 때, 북한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9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대해 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등을 통해, 그리고 서해 해상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무효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NLL 주장에 대해 북한이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유엔군 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으로 1966년부터 1994년까지 28년간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의에 참석한 이문항씨는 "북방한계선은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그냥 우리(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 선 이상 더 북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라고 주장하며, "28년간 참석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남북관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데 영토나 영해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남북관계는 정전상황으로 평시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NLL이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군사관리체계의 일부분으로서, '전쟁수역 내지 군사·안보차원의 경계



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2)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해석과 해상경계선 논의 시점

2000년 정상회담이후 2007년까지 개최된 장성급 회담에서 한국측은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 역할을 해온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남북이 합의한 충돌방지 관련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합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2007년 개최된 장성급 회담에서는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해상경계선 문제를 논의해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북한측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상경계선 논의 시점은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수준과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에서 충돌방지 합의 이행의 정착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이행해 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 3. 향후 과제

### 1) 우발적 충돌방지의 제도화

해상경계선 설정은 남북한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우선적으로 서해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이 중요하다. 남북한은 2004년 6월 2차 장성급 회담에서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 함정에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상선 통신망을 활용, 상호위치 통보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측의 호출에 북한측의 응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서는 기존합의를 충실히 이행해가는 상호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서해경계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는 긴장의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현재의 합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충수역에서의 물리적 접근을 방지해 가는 노력이 추후 진전된 이행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 2) 남북 해운 협력의 활성화

최근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남북해운합의서가 무엇인가? 2001년 9월 제5차 장관급회담부터 논의해서, 2004년 6월 정식 서명하였고, 2005년 정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남북 각각 7개항 구간 항로 개설, ② 항만에 기착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한 동등 대우, ③ 해상 사고시 상호 협력 ④ 해사 당국간 통신망 개설 등이다. 이러한 합의 사항에 따라 남북 항로는 그동안 3국 선박을 이용하던 부정기 항로에서 공식항로로 전환했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1999년, 2002년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경험하면서, 해상에서의 통신협력을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북해운 합의는 남북 군사당국간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채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해운합의서가 파기되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도 무효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남북해운합의서가 파기되면 항로 변경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의 제주해협 통과외의 경우, 53해리의 거리단축과 12노트 항행기준으로 소요시간이 약 4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중소 기업중심의 대북 위탁 가공 사업은 임가공료가 국내의 1/3~1/4 수준이지만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성이 떨어졌었다. 그러나 남북 해운 합의로 외국 국적의 선박을 용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간 30억원 이상의 용선료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산 모래 반입, 지하자원 수송 등에서, 과거처럼 공해로 나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항로를 이용함으로써 그만큼 수송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동해 항로도 마찬가지다. 금강산 관광 유람선이 처음 출발하던 때를 기억하는가? 한참 공해로 나갔다가 다시 북한 영해로 진입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크겠는가? 동시에 남북간 운항 선박의 안전보장, 구조 구난체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선박 운항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북한인근의 동해수역에서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인 구

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PSI 논의와 관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가 논란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통과 선박과 관련, 북한을 출발하여 제3국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나, 제3국에서 북한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3국으로 향하는 민간 선박의 통과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PSI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았다. 동시에 군함, 정부측 선박, 어선 등도 합의대상이 아니다. 화물선에 한정되고 있다. 왜 지금까지 의심선박에 대해 정선, 승선, 검색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북한 화물이 석탄, 시멘트, 식량 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포괄적인 해운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의 효력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 위험을 가져올 PSI 전면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 3) 서해에서 호혜적 이익 구조의 창출

서해에서 공동어로는 1999년과 2002년의 군사적 충돌이 결국 꽃게잡이 경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과거 남북 협의에서 남북한은 공동어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기준수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인바 있다.

남쪽은 NLL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북쪽은 NLL 남쪽지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동어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합의 가능한 시범수역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상호 신뢰를 반영하여 확대해가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직항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예성강이나 해주인근 해역에서 모래를 싣고 오는 남측 배들은 직항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선박들이 해주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백령도를 돌아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운행 시간과 비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허가받은 민간선박에 한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직항로를 허용하는 방

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 서해 평화 협력 지대 구상의 구체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방안을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한강하구의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한강이 서해로 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있는 한강하구를 준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한강하구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평화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해안 접경수역은 연안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물범과 저어새 등 각종 보호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에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협력을 추구하며, 함께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긴장완화와 환경 생태 보호를 위한 홍해 해양평화공원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주 평화협력 단지의 조성도 필요하다.

해주항만을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위탁가공 위주의 해상 공단을 조성할 수 있다면, 중국의 연안지역과 남쪽의 서해 산업단지를 묶을 수 있는 새로운 황해경제권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2007.11)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통일시론』 통권 3호(1999.7)

이문향, 『JSA: 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이장희, “서해 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 한강 하구 구역, 서해 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 10집(2001.8)

발제 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 추진 현황

남정호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2009. 4. 14

남정호, 육근형, 이구경,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발표 순서



## I. 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 해양평화공원 정의

####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이란?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접경연안의 생물다양성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Protection),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Peace), 통일경제 번영(Prosperity)의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다

기능 복합 공간



## □ 지리적 범위



# I. 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 해양평화공원 틀

### 공간중심 관리방식 (전통적 관리방식)

- 해양평화공원 공간획정
- 공간관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수행
- 관리체계(공동개별 관리단 구성)

필리핀-인도네시아 추진 중

### 프로그램 중심방식 (연안애걸 사업수행)

- 걸경연안의 공동관리 연안 도출
- 연안애걸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 및 수행
- 관리체계(개별 관리단 구성)

홍해(이스라엘, 요르단) 및 보나치오(프랑스-이탈리아) 사례

### 혼합 방식 (공간관리+ 연안애걸)

- 걸경연안의 공동관리 연안 도출
- 정치군사 이해관계가 적은 지역 대상 시범지정
- 연안애걸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 및 수행

✓ 연단계 한반도에 적합한 해양평화공원 틀

✓ 공동어로·평화수역이 해양평화공원의 거점 역할





## I. 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한반도 고유 생태적 가치의 보전**

(겨어새, 풀벌레, 노랑부리 딱새, 갯벌, 독산어등)

**서해연안 경제벨트와 생태벨트의 공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육상중심의 개발압력 합리화 조정)

**서해 남북 정치, 군사 긴장상태의 완화**

(남북한 경계지역에서 가장 높은 긴장 수준)

**남북한 해양환경보전 및 자원관리 분야 협력토대 구축**

(해양환경, 자원관리 논의 경주, 관리의 사자지대 해소 필요)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남북협력 사업 외국인 투자 확대**



## I. 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주요 항목

설문조사 주요 결과

2005년  
지역주민

2006년  
일반국민

2007년  
지역주민

대북인식과 군사충돌의 원인  
제할 가능성

남북협력 전망과 협력분야,  
수산자원관리

점경해역 생태계 보전 필요성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인식과 지정 필요성

우호와 경계의 양면적 특성을  
갖는 대북관(對北觀)

NIL에 대한 남과 북의 견해차에  
따른 군사충돌의 가능성 상존

중국 어선의 잦은 조업 방식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우려

남북 해양수산분야 경제협력 중시

서해점경 해역의 우수한 생태계에  
대한 보전 필요성 인정

서해점경연안 평화정착과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리 체계 모색





## I. 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한 합의사항



## I. 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관계





## I. 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한계

생물종다양성 거점으로서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생태적

남북한 해양협력 효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부족

서해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산하 환경 및 생태계를 이용한 남북한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자연환경

- 복잡한 해안선, 갯벌, 해안사구 발달
- 연평균 기온 10.1-11.2℃, 강수량 940-1,300mm
- 수질조사 자료 매우 제한적
  - 북한자료: 자료마다 차이가 커 신뢰성 의문
  - 남한자료: 접경지역 가용자료 매우 부족

구분		면적(km <sup>2</sup> )	남한갯벌·대미	비고
서해연안 접경지역	북측	958	17.8%	북한 갯벌의 약 80%
	남측	487	8.7%	남한 갯벌의 약 20%
소계		1,445	26.0%	

주: 한반도의 갯벌 면적은 북한의 50만ha와 남한의 2,660만ha를 합한 3,160만ha로 추정됨.  
자료: 해양수산부(2009), 환경호 리(2009).



## Ⅱ.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생태계 현황

- 유라시아 대륙을 이동하는 섭금류(황새, 두루미)의 중간 기착지
- 세계적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의 번식지 및 산란지
- 노랑부리백로, 대청부채, 물범 등 주요 생물지리학적 대표 종 서식
- 꽃게의 주요 어장

### ★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

2002년 이전 전국 생산량의 75% 이상 차지

2003년 이후 전국 생산량 대비 5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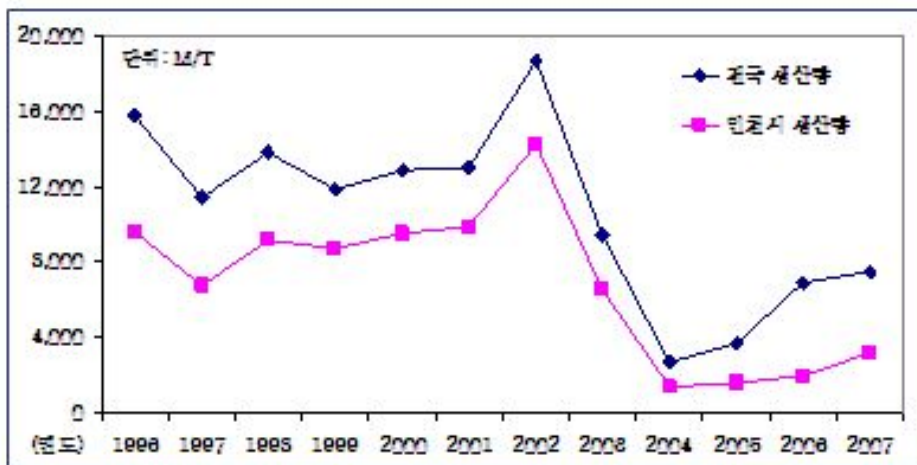
2005년 이후 전국 생산량 대비 36%

2006년 전국 생산대비 35.1% 감소



## Ⅱ.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남한 꽃게 생산 추이(1996~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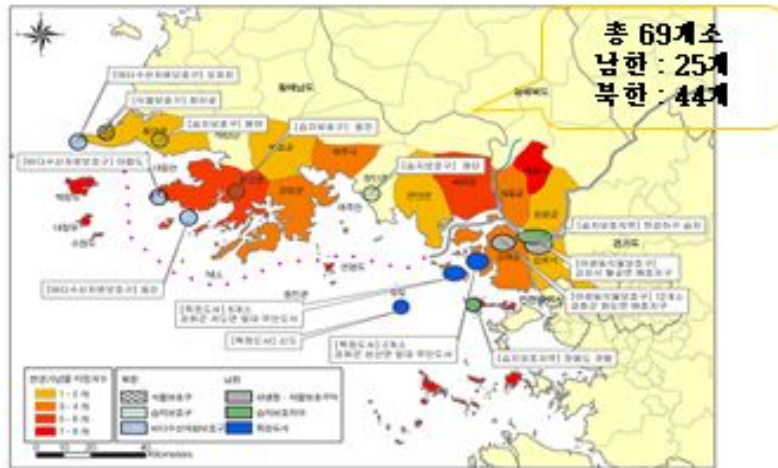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인구 및 토지이용 현황 : 연안육지부의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  
- 서해연안 접경지역 관련 행정구역 : 15개 행정구역

구분		해당 행정구역
남한 (8개)	인천광역시	공화군, 용진군
	경기도	김포시
북한 (12개)	황해남도	해주시, 풍천군, 태안군, 용진군(6), 공평군(1), 백성군, 경단군(1), 연안군(1), 해령군(4개의 도동지구)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군, 관문군

- 인구
  - 남한 인구 : 291,292명 (연평균 인구증가율 4.68%로 증가 추세)
  - 이에 반해 강화군과 용진군(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각각 0.87%, -0.17%로 감소 추세
  - 북한 인구: 공식적 시·군별 인구 데이터 없음  
'93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그 당시 개성직할시)의 인구는 2,345,386명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 수산업 현황

##### - 북한 : 양식업 위주

- 어족자원 감소, 어선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어획량 감소
- 최근 북한의 수산업 생산동향에 대한 보고가 없음(통일부, 2006)
- 원인 :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어선의 유류공급 부족 및 북한의 농업관련

정책 우선 지원

##### - 남한 : 어선·양식어업 위주

- 어로한계선, NLL 등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업활동 제약
- 남한의 수산물 현황은 총 4702톤(웅진군: 2573톤, 강화군: 2129톤)
- 이 중 웅진군 백령면의 수산물 생산이 2011톤으로 대부분을 차지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서해5도 조업구역도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공업현황**
  - 북한: 해주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남한: 대규모 산업단지는 없으나, '개성공단', '개풍공동구개발구', '한강하구 모래 채취사업' 개발을 위한 계획과 투자 추진
- **개성공단 현황: 개성시와 판문군 일대**
  - 총 2,000만평(66.1km<sup>2</sup>) : 공단구역(800만평)과 배후도시(1200만평)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 조성하여 2004년부터 입주 시작
- **항만현황**
  - 해주항: 1974년 개항, 남북 교역의 중요 무역항, 남북한 일반 교역상품 및 수산물 반출입 처리, 북한산 모래처리(남한 골재수급용)
  -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를 위해 모래 운송선박의 인천-해주 간 운항항로 단축, NLL 통과하는 모래운송 선박 수를 1일 최대 10척까지 확대 승인하는 방안 검토 중(통일부)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개풍 공동개발구 계획**
  - 지역: 개풍군 일대
  - 면적/기간: 총 2,000만평(개성공단 조성규모의 25배) '06년~'20년
  - 개발계획
    - 인천광역시는 개성시의 산업,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인천전용공단을 포함한 1,000만평 개발
    - 강화군 철산리에서 개풍군 고도리간 길이 1.4km(4차로)의 연육교 건설 북한에 제안
- **한강하구 모래채취사업**
  -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한 합의(2006.6)
  - 남북한 중립수역에 위치한 한강하구의 골재자원 남북한 공동이용이 목적
  - 130km<sup>2</sup> 면적에 양질의 모래 1,080,000,000㎥ 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연간 100,000,000㎥의 국내 모래수요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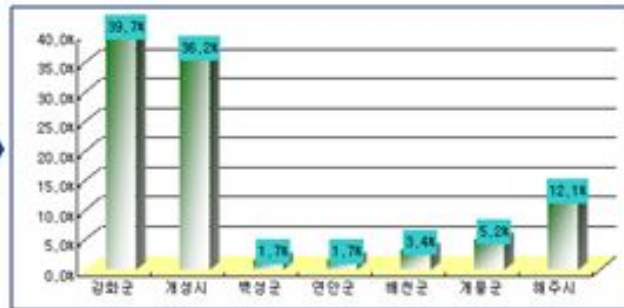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역사·문화현황

- 신라시대부터 군사 및 교역의 요충지
- 한국전쟁 전까지 연평도 풍어제, 강화도 대동굿, 꽃당제 등 동일한 토속문화
- 공유했던 것으로 추정됨
- 청동기시대에서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다양하고
-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음

서해접경지역  
문화재 분포도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측의 3개 권역 별 현황 및 이슈

- 권역 구분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권역별 현황 및 이슈 : 백령·대청권역

- 자연·생태계 현황
  - 면적/해안선 : 백령도(46.35km<sup>2</sup>/56.75km), 대청도·소청도(15.56km<sup>2</sup>/41.24km)
  - 대규모 모래해안, 해식애 발달
  - 보호구역 6개소, 천연기념물 5건 (물범, 콩돌해안, 사곶의 사빈 등), 명승 1개소(두무진)가 있음.
- 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 4,931명(2005), 인구밀도 93명/km<sup>2</sup> (연안인구밀도의 1/4수준)  
→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 변화율이 1.5%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토지이용 현황 : 임야-71.65%(43.58km<sup>2</sup>), 전-3.9%(8.44km<sup>2</sup>), 답-7.93%(4.83 km<sup>2</sup>)
  - 수산업 현황 : 어촌계 총 6개, 계원수 500명, 어업권 83건, 701ha



백령도 두무진 전경 (남영호, 2008)



대청도-남포리 방조제 (장영순, 2002)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권역별 현황 및 이슈 : 백령·대청권역

- 관리여건
  - 남한 서해연안 최북단에 위치해 내륙에서 접근이 어려움
  - 고고학적, 지형경관적, 지질학적, 생물지리학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 불안감, 중국 어선 불법어로 행위,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생활여건 저하

점박이 물범의 번식지,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북한, 중국과 광역적 생태계 보호 협력체계 마련 필요

간척사업, 방조제 조성 등 연안 개발로 지형경관 훼손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지역토착 문화를 결합한 지속 관광개발 필요

점박이 물범 (환경부추진)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권역별 현황 및 이슈 : 연평권역

- 자연·생태계 현황
  - 면적/해안선: 7.29km<sup>2</sup>/36.67km
  - 해방 전 왜정시대는 황금 조기파시가 형성됨
  - 남한에서 충남서산 앞바다와 연평도 사이가 꽃게 최대 서식지
  - 꽃게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 2005년 꽃게 생산량은 2001년 생산량의 15.9%에 불과
- 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1,215명(2005), 인구밀도 166.7명/km<sup>2</sup>  
→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 변화율이 0.9%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토지이용 현황: 임야-76.71%(5.59km<sup>2</sup>), 전-9.14%(0.67km<sup>2</sup>), 답-6.20%(0.45km<sup>2</sup>)
  - 수산업 현황: 어촌계 총 2개, 계원수 349명, 어업권 29건, 295ha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권역별 현황 및 이슈 : 연평권역

- 관리여건
  - 두 번의 군사 충돌로 인한 지역안보 불안 고조
  -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
  -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꽃게를 비롯한 수자원 고갈

#### ▪ 현안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 형성

중국 어선 삭쓸이 어업으로 지역경제 피해

침적 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



연평도 내 방치된 폐망폐기물(과거엔 2005)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권역별 현황 및 이슈 : 강화·한강하구 권역

- 자연·생태계 현황
  - 면적/해안 : 560.7km<sup>2</sup>/291.8km
  - 232.1km<sup>2</sup>(전국 연안갯벌의 8.4%) 분포
  - 한강하구는 서해에서 하구 독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
  - 천연기념물 5개, 야생동식물 4개, 습지보호구역 1개 지정 (강화·한강하구 권역 통합)
- 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 79,886명(2005), 인구밀도 142명/km<sup>2</sup>  
→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 변화율이 -1.04%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토지이용 현황 : 임야-42.4%(237.9km<sup>2</sup>), 전-9.0%(50.3km<sup>2</sup>), 답-29.4%(165.1km<sup>2</sup>)
  - 수산업 현황 : 어촌계 총 11개, 계원수 4632명
  - 개성공단, 개풍공동개발구, 골재채취, 할만개발이 계획·진행중임



## II.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 □ 권역별 현황 및 이슈 : 강화·한강하구 권역

- 관리여건
  - 백령·대청권역과 연평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 및 이용 수요
  - 한강하구의 수질 악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  
→ COD의 경우 대체로 II 등급 유지/염하수로는 3.2~ 4.4mg/L로 III 등급 및 등급 외 수질을 보임
- 현안

수질 악화 및 생태계 및 수산자원 훼손

연안 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심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 우려

강화 갯벌, 한강하구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사이의 갈등



### Ⅲ.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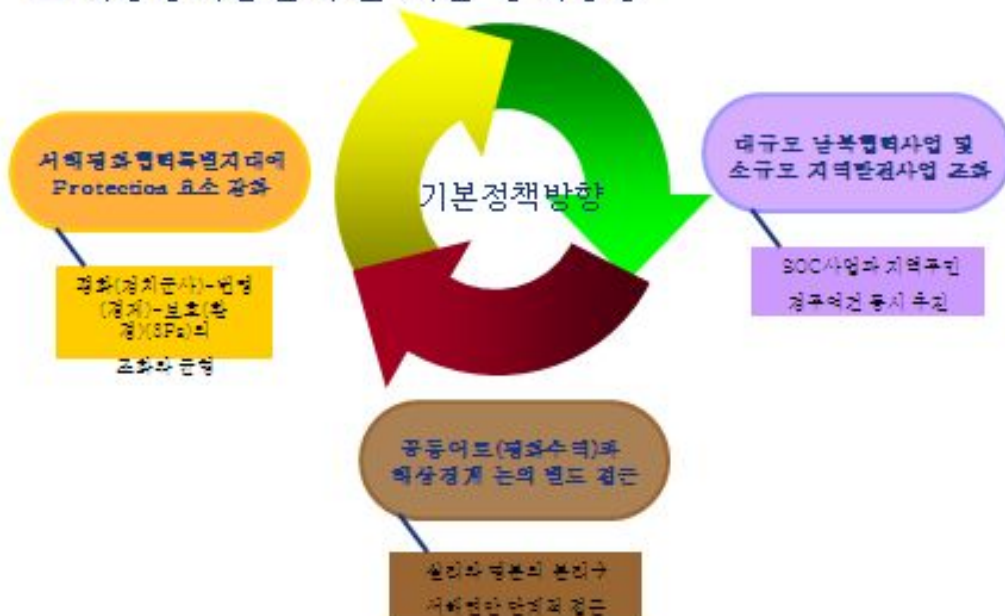
#### □ 해양평화공원 추진 SWOT 분석(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의 경제화, 민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교류, 국제협력강화</li> <li>- 유엔포럼 및 국제협력포럼 개최</li> </ul> </li> <li>※ 남북한 해양협력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북동경제인프라 구축(서해경제협력특별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남북협력추진 경제인프라지원 (남북경제협력 기금지원)</li> <li>- 남북한 해양수산 분야 협력기반 확보</li> <li>- 해양평화공원 추진사업 추진역량 강화</li> </ul> </li> <li>※ 남한의 연합관 해양수산정책 및 협력지향</li> <li>※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경제협력추진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분야 교류협력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수산, 문화, 환경, 영남은대유무과</li> <li>-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과외부처</li> <li>- 경제연구, 북상국과의 남북협력</li> <li>- 환경보전과 국제협력부처(유엔과 보건의 교류)</li> <li>- 북한의 해양수산기술 개발유무 및 시효인한 남북한 교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북극권개척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협력추진위원회 개최</li> <li>• 북동경제특별지대 조성(경제, 문화)</li> <li>•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남북국가의 협력의지 강화</li> <li>- 인적교류협력추진기구 및 북동경제특별지대추진기구 설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보검한사에 따른 갈등</li> <li>• 북상관계 환경유니트와 북연과 남한의 교류</li> <li>- 기후조조조한 환경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li> </ul>



### Ⅲ.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 □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 정책방향







### Ⅲ.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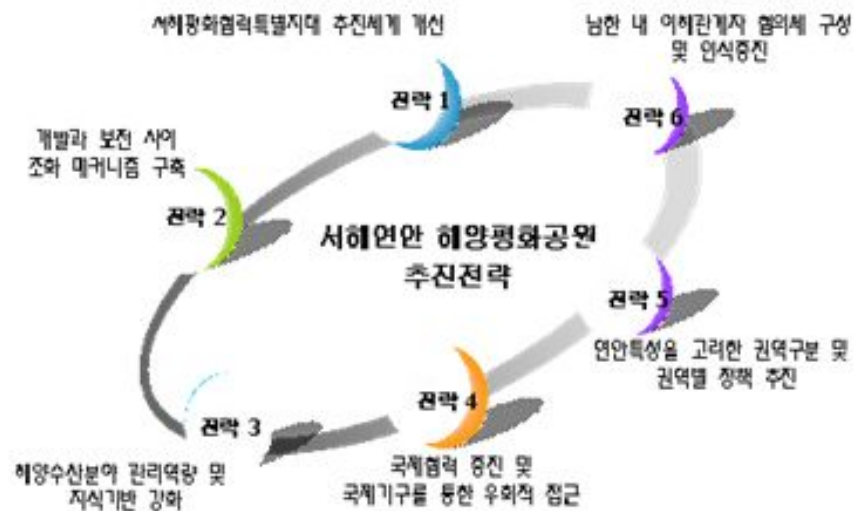
#### □ 해양평화공원 추진 원칙

- ①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
- ② 소규모 실현 가능한 사업 및 실사구시의 원칙
- ③ 점진적, 반복적 접근의 원칙
- ④ 전문가 중심의 비정치적 접근의 원칙
- ⑤ 지역주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



### Ⅲ.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 □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Ⅲ.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 □ 해양평화공원 단계별 추진체계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 결 론

<p>해양평화공원 구상은 평화정책(Peace) 생물종다양성 및 환경보호(Protection) 지역경제활성화 및 통일경제기반조성(Prosperity) 달성을 위한 전략적 틀임</p>	<p>10·4 남북정상회담과 11·5 총리회담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함</p>
<p>시해 특별지대는 정치군사적 평화 및 경제적 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경제·환경적 평화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p>	<p>공동어로·평화수역은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공간적 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임</p>



## IV. 결론 및 정책제언

### □ 정책제언

1

•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 상경계설정 현안 분리 접근

2

• 공동어로·평화수역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동관리·경비단 (Co-Rangers) 운영 및 어업합작회사 설립 준비

3

• 해주항을 아시아의 미항, 지구촌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

4

• 해주경제특구 개발 콘텐츠 차별화 및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추진

5

•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에 따른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 공동수립 (Oil-spill Contingency Plan)

6

• 해양평화공원 아시아 포럼 구성 및 운영(MPP Asia Forum)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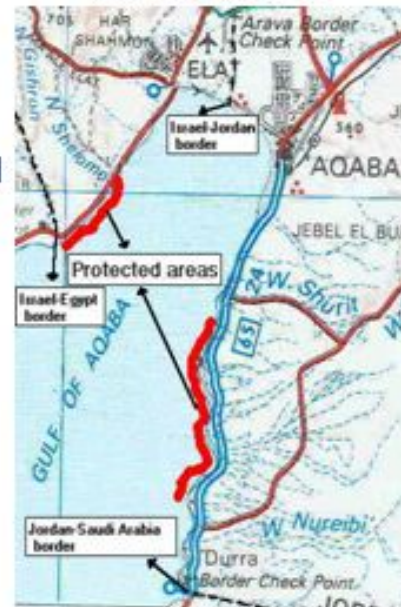
## <부록> 해양평화공원 추진 국외사례

### □ 국외사례 ① : 홍해 해양평화공원

#### ▪ 개요

-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체결
- 1996년 아카바/에일랏 특별협약 체결을 통해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정에 합의
- 에일랏 산호보호구역(1.44 km<sup>2</sup>)과 아카바 해양공원(3.75km<sup>2</sup>)을 대상으로 지정
- 미국 대외원조기구와 국제환경기금의 지원으로 1999.10~2003.6월까지 1단계 사업 완료
- 2단계 사업부터는 이스라엘-요르단 정부가 지원하는 양국 간 프로그램으로 전환 예정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정 범위



출처: Abu-Alisheh et al., 2008



### □ 국외사례 ① : 홍해 해양평화공원

#### ▪ 지정 목적

- 이스라엘-요르단 협력에 기초한 해양공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북부 아카바 만의 산호 생태계와 해양환경 보호

####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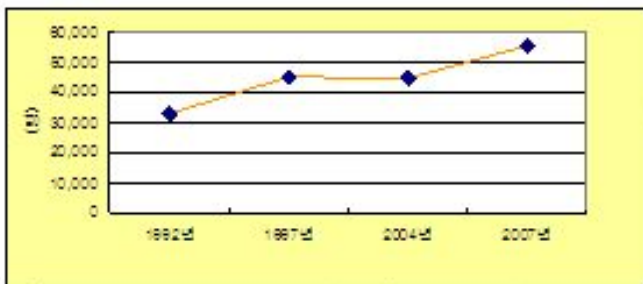
- 아카바 만 해양생태계 보존노력 확대  
(공동조사 방법론 및 공동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산호 생태계 복원, 대중인식 제고, 웹사이트 개설 등)
- 이스라엘-요르단 과학기반 공동협력 강화
- 아카바-에일랏 지역역량 강화
- 해양 절경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국제적 모범사례



사진: 국립산호초연구소, 아카바, 2008



사진: 산호초 모니터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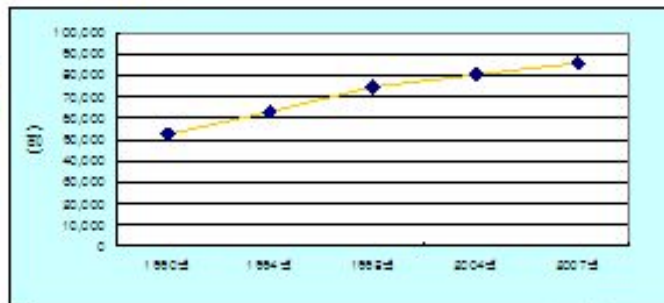


에일랏 인구변화 추이

자료 :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cbs.gov.il>)



아카바 인구변화 추이



자료 :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Department of Statistics (<http://stats.doc.gov.jo>)





### 이스라엘-요르단 아카바 만 주요 오염원 관리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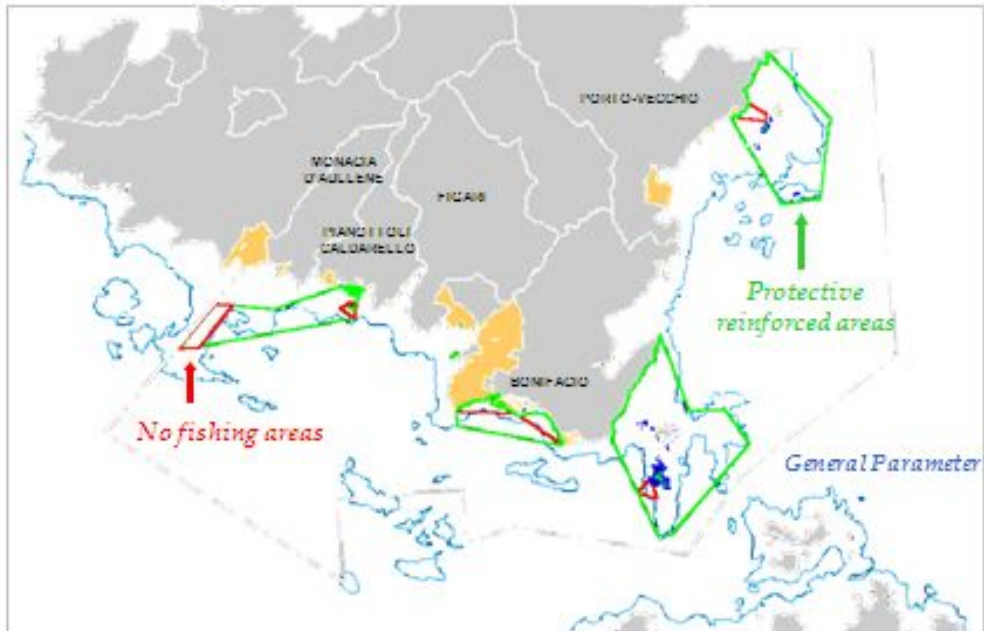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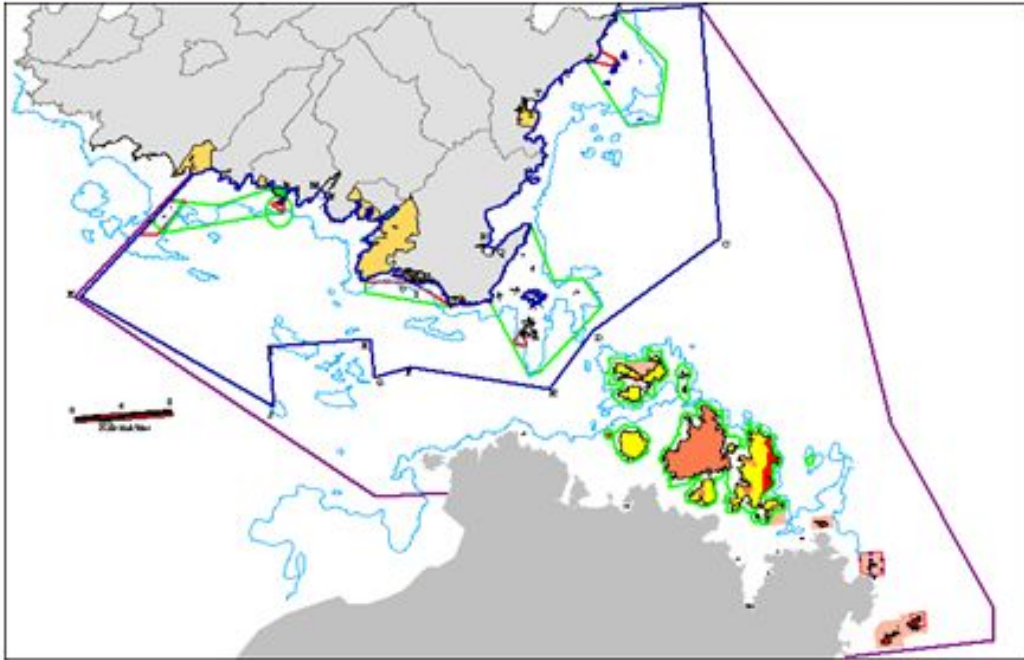
환경오염원	아카바	관리수준	에일랏	관리수준
유류사고	2	상	1	상
플라스틱 수	8	하	8	하
산업개발	1	중	N/A	해당사항 없음
관광개발	1	상	1	중
어업	2	하	2	하
양식업	8	상	8	하
인산염	8	하	8	상
하수	1	상	1	상
선박 계류장	1	상	1	하
데크레이션 활동	1	중	1	중
관리노력 점수: 놀음=1 공간=2 방문=8				
자료: Abu-Abbeh et al., 2009				



### □ 국외사례 ② : 지중해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 ■ 개요

- 프랑스와 이탈리아 1988년 보니파시오 해협 상의 해상경계획정에 합의
- 1992년 양국 환경부 장관이 국제해양공원 지정에 합의
- 천혜의 해양환경 보전 및 해협으로의 과도한 선박 운항 대응
- 계획 수립 및 관리 : 코르시카시 산하 코르시카 환경청
- 1999년 보니파시오해역 자연보전구역 지정(프랑스)
- 1999년 막달레나 군도 국립공원 지정(이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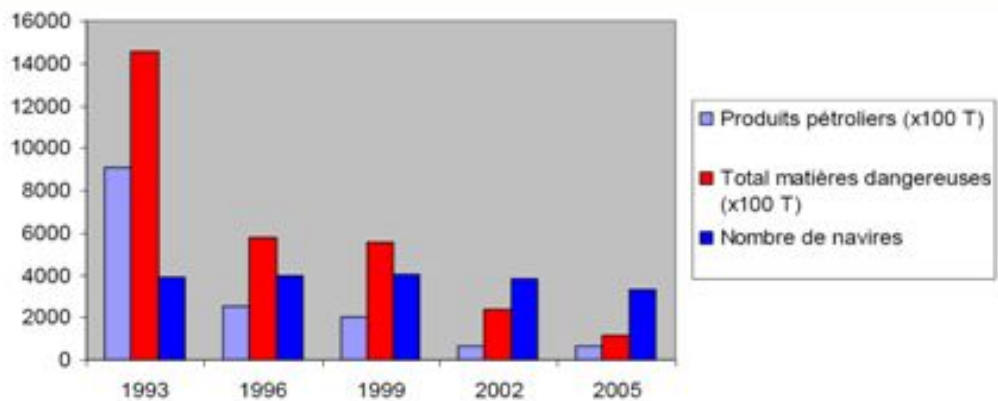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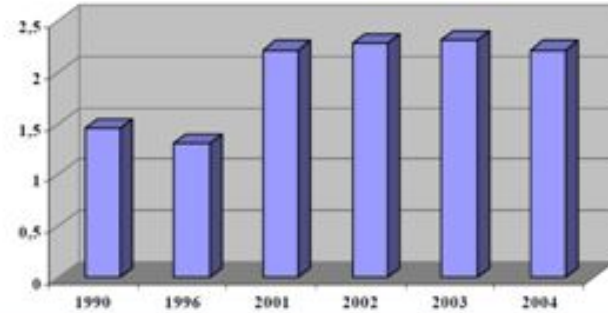




## ■ 성과

- 해양생물 보전 및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유지
- 위험물 선적 선박 통항 감소
- 연간 2백만 이상 방문
- 성수기 하루 2만명 이상 방문

Millions de Touristes



- 위험물질의 보니파시아만 통항량 감소
- 전체 통과 선박수는 유지





□ 국외사례 ③ : 인도네시아 - 필리핀 산호삼각지 해양평화공원

▪ 개요

- 인도네시아-필리핀 양국 간 술라웨시해 상의 해상경계획정 및 참치 자원을 둘러싼 갈등 지속
- 보초 산호 600여종 및 3,000여종 이상의 산호초 어류가 서식하는 해양 생물종다양성의 보고
- 2006년 인도네시아-필리핀 수산/해양환경 다자간 회의에서 WWF가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제안
- 해양평화공원 지정(안)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2008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산호삼각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1.5million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산호삼각지 해양평화공원 추진원칙 및 목표



자료: Lopez & Escomide(2007)를 재구성



출처: WWF(2007)



산호삼각지 해양평화공원 예상 지역



출처: WWF(2007) 수정

### 발제 3

## 서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와 녹색공존의 바다로

김제남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남북관계는 그동안 쌓아 온 상호신뢰와 교류협력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대화가 중단되고 상호 긴장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북 인공위성을 둘러싼 갈등과 군사주의 대두 그리고 지난 1.30 서해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는 북 조평통 성명 이후 한반도 서해접경 수역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 등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다.

어떠한 분쟁이나 충돌도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서로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그동안의 역사를 교훈 삼아 남북관계의 진전과 전환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생명과 평화를 소중한 시민가치로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영역이 이를 남북관계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평화로운 해법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서해상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이 평화와 녹색의 공존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반도는 남북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1400km에 달하는 백두대간 산줄기, 동서를 녹색허리띠로 잇는 248km의 비무장지대, 백두대간 각 산줄기로부터 발원한 강줄기, 이 강줄기가 전 국토를 흘러 서해와 동해, 남해로 합수되고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남북은 한반도라는 하나의 국토 공간 안에 정주하지만 분단으로 인해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이 만들어졌다. 비무장지대, 서해와 동해의 해상분계선 등이 그것이다. 그 접경지역은 사실상 군사분계선으로서 남북 간의 긴장과 군사충돌에 민감한 지역이다. 그동안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진전되면서 크게 군사긴장이 걸려 있는 접경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평화보장과 공동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협의가 진전되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2차례의 연평해전을 겪은 바 있는 서해상에서 남북서해평화협력지대를 창설하자는 10.4 선언이 남북 간에 합의되기도 하였

다. 이 사업은 현재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그동안 진척사항이 없다.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세부 이행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고 서해 접경수역에서의 해양생태계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희망의 바탕이 되고 있다.

### <서해 접경수역의 생태계 현황과 특징>

남북이 접경하고 있는 서해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한강 하구와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포함하는 서해 해상이다.

사실상 정전협정에 의하면 육지와는 달리 서해상은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이 군사분계선과 같은 역할을 해오며 남북 간 민감한 군사긴장과 분쟁의 현장(서해연평교전 99년, 2002년)이 되어 왔다. 서해상에서 남북 간 군사긴장이 지속되어 온 한편 이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접근과 개발이 제한되면서 서해 해양생태계를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해접경수역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유입되는 기수역이며 이곳 기수역 생태계는 해양에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지로서 야생동식물과 수산자원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 한강하구와 황해남도 해안을 따라 갯벌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서해접경수역 상에 위치한 강화도, 황해남도, 서해5도와 무인도서는 희귀한 철새들의 최대서식지가 되고 있다.

남한은 서해접경수역 일대에 습지보호지역(옹진군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천연기념물(황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장산꽃매, 개리, 흰꼬리수리, 황조롱이, 매, 검독수리, 점박이물범, 콩돌자갈해안, 사곶해안 등), 특정도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25개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식물보호구, 습지보호구, 천연기념물, 바다수산자원보호구 총 44개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모이고 육상, 연안, 담수생태계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서해 생태계 핵심지역으로서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자연형 하구 갯벌(32.6%)이 보전되어 있고 한강하구의 모래는 서해연안 갯벌 형성과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지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한강하구에는 저어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3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알려져 있다. 지난 2006년 4월 환경부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습지 한강하구 일대 60,668km<sup>2</sup>(1,835만평)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서해5도와 연안역의 생태계 현황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지난 2008년 9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고한 <07년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해5도 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는 육상생태계에 국한되어 있어 해양생태계 현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천 연안도서 및 서해5도 도엽에서 총 68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중 37종(54.4%)이 출현하였으며, 일부 국내 미기록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추후 정밀조사를 통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서해5도는 동백나무, 뇌성목, 실거리나무 등 난온대 식물의 자생복방한계지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대청도는 동백나무 자생복한지(천연기념물 제66호) 및 대청부채(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 II급)의 자생지로 식물지리학상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인천에서 228km, 북한의 황해도 장연군과 직선거리로 10km, 장산곶과 15km 거리에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콩돌자갈해안, 사곶해안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꼬리수리, 황새, 매 등 남북을 오가는 멸종위기종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다. 2005년 녹색연합 조사결과 점박이물범은 백령도 일대에서 300-40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04년 KBS 김서호 PD 등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백령도와 중국 보하이만 연안 일대를 오가는 점박이물범의 이동경로가 밝혀졌다. 이후 2006년 녹색연합과 국회바다포럼이 개최한 한중 점박이물범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한 중국 과학자로부터 중국 대련 보하이만 점박이물범 서식특징과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중국 보하이만 얼음바다에서 출산과 월동을 하고 봄부터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 서해연안에서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실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도 본격 조사가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까지 계획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대연평도, 소연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일대에 위치하며 대연평도는 북한 영토와 10km 정도 떨어진 서해 방위 전초 지역이다. 해식애와 자갈해안의 발달되어 있으며 대연평도 일대에는 다양한 종과 많은 개체수의 멸종위기 철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도는 서해접경수역에서 수산물생산량이 풍부한 곳이다. 60년대까지 조기의 풍어지대였다. 90년대 이후 꽃게의 주요 생산지로 명성과 주민소득을 높여 오다 2000년대 이후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평균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연평도가 마주한 해주만과 옹진반도에 형성된 모래톱이 어류 산란장이 되고 한강하구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 등이 풍부하여 이곳에 풍요로운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북방한계선과 어로한계선 사이에서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불법어로행위로 싸늘이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 어민들의 남획이나 폐어구 등의 바다투기로 어장이 오염되면서 생산량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곳 어민들은 서해상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어로한계선을 넘는 어업 활동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지도가 강력해지고 있어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꽃게잡이철을 본격 앞두고 지난 꽃게잡이를 두고 벌어진 2차례의 연평해전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최근 줄어드는 어획량 감소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해접경수역 남북 녹색공존 방안>

#### 안보논리와 경제논리 위주의 협력을 넘어서

그동안 접경지역의 공존, 공영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은 경제이익 창출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었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의 좋은 모델로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 넓게 발달되어 있는 습지와 초지생태계를 단절하고 훼손시키는 사막화사업이었다. 민통선을 따라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과도하게 내놓고 있다. 또한 한강하구 유역의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신도시 개발, 경인운하와 한강운하 개발사업이 한강하구를 개발하고 서해안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인지라 한강하구 습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서

해상에 평화수역,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해주 경제협력특별구역 설치, 한강하구 골재채취 공동사업 등을 담고 있다. 서해접경수역에서 보호, 평화, 번영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추진 배경이 될 뿐 실제 내용은 평화공존과 경제이익 창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2006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되고 2007년 10. 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공동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은 수도권 24년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10억 8천만 톤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사업으로 13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나들섬 구상도 한강하구 자연퇴적지 900만평을 개발하는 안이다. 대부분 한강하구 습지를 매립하여 땅을 만들어 물류단지를 만들고 항만을 조성하고 뱃길을 낸다는 계획이다. 남북협력시대, 동북아 협력시대를 위해 한강하구의 천혜 자연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희생되고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한강하구는 서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연안생태계를 이루는 원천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인 너른 갯벌을 이루는 원천이다. 또한 서해 대표 수산자원인 꽃게들의 산란과 생육을 가능하게 하는 서식지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서해접경수역이 남북 갈등과 대립의 표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협력을 이유로 개발과 파괴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 녹색공존의 바다로

서해접경수역에 대한 실태파악은 접근성과 관심의 부재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동안 남북 군사특수성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고 해양생태계와 해양보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그동안 이곳은 연안개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10년 주기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도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아직 법에 근거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해양보호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그리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해양생태계 조사로 서해접경수역에 대한 기본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서해북방한계선을 갖고 있는 서해접경해역에서 남북이 분쟁을 넘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녹색의 관점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서해접경수역의 남측 수역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결정의 기본은 해당 현장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해접경수역 생태계 이해, 현황파악,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 등을 만들어 가면서 남북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남북공존방안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환경지수가 세계에서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연생태계 실태를 축적한 기초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해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선행하면서 이곳 접경수역의 생태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까지 민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서해접경해역의 생태계 특징을 몇 가지 지표로 단순화해 볼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자연형 한강하구 습지, 멸종위기 1급 조류로서 (노랑부리)저어새 및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 2급 야생포유동물로서 점박이물범, 멸종위기 2급 식물로서 대청부채와 북방한계 난온대식물인 뇌성목, 서해 대표 수산자원으로 꽃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서해접경해역 생태계 특성과 서식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깃대종(flagship species: 생태계의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이 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을 선정하고 이들 서식지를 조사하여 깃대종 생태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이는 해양생태계보전법에 근거해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종을 선정하는 절차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백령도 일대 물범바위와 같은 주요 서식지와 이동경로 연안역을 '점박이물범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꽃게 산란과 치어생육에 중요한 연평도 인근 모래톱 연안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해접경해역의 생태계 특징과 더불어 생태계 총량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해양생태계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포함한 해양생태계보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초자료는 서해접경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이자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점박이물범이 중국 보하이만에서 월동하고 서해를 따라 남북의 연안 역으로 회유하는 생태와 서식지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공동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내외 환경협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서해접경수역의 공동 목표를 재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시기 남북이 합의한 서해특별협력지대 구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 단계 가장 부드럽고 접근 가능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새롭게 모색해 가기를 바란다. 군사안보, 경제번영, 평화공존, 생태보호의 관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생태보호와 평화공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딱딱하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와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평화로운 고리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서해물범생태평화공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서해생태계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같은 개발방식을 지양하면서 남북이 접경하고 있는 국토 공간을 분쟁지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동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 공동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남북이 협력하여 현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세대에게 돌려 줄 아름답고 푸른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책임이 될 것이다. 남, 북 당국이 명분과 분쟁이 아닌 실리와 평화를 위한 정책전환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서해물범생태평화공원의 지정범위는 갯대종 생태지도 및 해양생태계 생태지도에 기초하고 또한 남북이 공동 조사하여 합의하는 물범의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지정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물범생태평화공원은 서해접경수역의 평화공존지대, 물범보호구역으로서 남북 평화와 녹색공존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셋째, 국제환경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국제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서해접경수역을 평화와 녹색의 바다로 만들어 가려는 남북 공동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물범생태평화공원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으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한 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선진사례로서 타국 접경수역의 다양한 평화공원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가 되고 있는 물범바위와 같은 서식지를 국제환경협약인 람사협약의 람사사이트로 등록하고 이곳이 람사습지로 지정되도록 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강하구 접경수역을 랍사협약 접경습지로 지정되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이다.

넷째, 남북 간 서해접경수역 협력 과정에서 시민참여, 주민참여가 중요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북의 민화협과 같은 중요 민간협력기구와 함께 '점박이물범 서식지 현황 공유와 보호방안'과 같은 의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서해접경수역의 평화와 녹색공존의 물고를 열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민간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점박이물범 서식지 공동조사와 보호를 위한 남북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은 남북 간에 기본 방향과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접경수역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발전과 주민생존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지지와 참여가 없는 보호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 주민의 인식 증진 과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세부 계획과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해접경수역이 남북 공동의 평화와 녹색공존지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녹색연합은 지난 2005년 물범 서식지조사 이후 백령도 그린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현재 국토해양부, 백령도, 주민과 협력하여 진행 중에 있다. 점박이물범 보호, 어촌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협력, 주민참여 차원에서 기본구상을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어업권은 대부분 해안에서 1km 이내 지정되어 있어 물범 주요 서식지와 겹쳐 있다. 북방한계선과 어업한계선으로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제한되어 어업지역이 백령도에 있는 하늬바다 앞 물범바위, 연봉 등 물범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들은 '물고기 길러 중국 불법어선에게 내주고 그나마도 점박이물범 주고 나면 어민들을 무얼 먹고 사는가?'라고 하소연을 한다. '점박이물범생태평화공원' 추진은 향후 점박이물범 보호를 통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이 '서해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접경수역에 거주하는 남북주민의 생업과 지역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남북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분리하여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한편 어민의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어로구역을 남북이 합의한 곳으로 지정

하고 공동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사대치 상황으로 어업활동이 금지되었던 북방한계선 주변이 공동어로수역으로 보장되면 어민들의 어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그동안 남북의 틈새에서 중국어선이 벌이던 저인망 불법어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서해상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이 평화와 녹색의 공존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백령도 점박이물범보호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시범사업 및 민간 간담회 결과보고서/2008.12
- @ 녹색연합/한강하구 생태지도/2008.11
- @ 녹색연합/ 한중 점박이물범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2006.6
- @ 녹색연합/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 실태보고서/2005.12
- @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2008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8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2005-2007

## 지정토론 1

###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검토해야

이 봉 조(전 통일부 차관)

#### 1. NLL의 불안정성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

○ 이미 99년과 2002년 두 차례 교전이 서해해상에서 발발하였고 앞으로도 우발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간주

- 정전협정에는 서해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해석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부재  
- 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의 부속지도에서 표기한 한강하구수역에서의 경계선과 실질적 사후조치인 북방한계선으로 인식, 북한도 70년대 초반까지는 이를 묵인

- 북한은 1973년 군정위 회의에서 최초로 NLL에 이의 제기이후 NLL은 유엔사의 자기 제한적 조치로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비합법적 경계선이라는 입장 유지

○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군의 해상작전의 한계선으로 설정되었다는 측면에서 법적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으나 그동안 해상군사 분계선으로 준수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

-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지난 1월 30일 북한은 조평통 성명을 통하여 남북합의 불이행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상기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조항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 성명에서 북한은 “당시 그에 대해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

돌과 전쟁위협성을 미리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 이렇듯 불안전한 군사경계선이라는 취약점으로 인해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 상존

- o 합의 사항의 일방적 폐기로 서해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으나 기존 남북간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서해에서의 평화정착 문제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실천적 과제로 부각

## 2.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연결의 3대 경협사업의 경험 활용

- o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육상분계선 이남과 이북간의 협력사업이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었음을 고려

- 이러한 과정을 해상에 적용하는 것이 서해평화협력 지대 설치 구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

- 선 협력사업 추진, 후 군사적 보장조치로 뒷받침하는 구도를 서해상에도 적용하면서 이를 한 단계 더 진전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 발전

-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하도록 조치

- o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NLL 무실화에 대한 우려는 육상에서 DMZ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행에 필요한 일정구역을 남북관할 지역으로 설정한 것처럼 해상 일정 수역을 남북관할지역으로 설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해상 경계선은 잠정적으로 유지

- 남북관할구역을 남북간의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수역으로 활용

- 서해안과 가까운 해안지역에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을 위해 해상 직항로 개설

-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시 비무장지대 내에 동해안선을 위해 폭100m, 서해안선을 위해 폭 250m를 각기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해상의 사정에 맞게 적용

- o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확정하는 문제는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유도



- NLL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개성공단 처럼 '군사안보벨트'를 '상생 공영의 벨트'로 전환
  - 해주를 해상을 통한 남한과의 협력 거점으로 설정하고 개성과의 연계성을 강화

### 3. 평화와 협력 그리고 녹색공존을 위한 구상

-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실천구상의 일환으로 추진
  -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서해 관련 합의사항을 종합 체계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
  - 꽃게철을 맞아 서해에서의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긴장완화 효과도 감안
  - 상생과 공영을 결합한 평화경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정립, 이 경우 공동어로사업에 국한하기보다 동북아의 중심축 역할 수행이라는 미래구상의 일환으로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삼각벨트 구축에 역점
  - 향후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제협력을 평화경제라는 우리의 구상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도 새로운 포괄적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 동시에 중국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려
  - 에너지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주변국가의 참여 유도를 통해 동북아 안보협력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의 의미부여
- 평화경제와 녹색공존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 공동으로 각종 해외사례 조사연구
  - 북측 서해안 연안의 수산협력과 생태자원(갯벌 등)의 보존 병행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 해주 인근지역의 온천 개발 휴양과 오락을 겸한 레저 특구 건설
  - 서해안 해양자원 공동조사, 희유성 어종 및 희귀 생물(물범 등)의 서식 실태 조사 등

지정토론 2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정토론 3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